건축물 유지 · 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· 관리를 위하여 유지 · 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.

-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·관리는 그간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나,
  - 건축법 제35조 개정(2012년 1월 17일)으로 다중이용건축물, 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 - 아울러,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2014년 7월 18일까지,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 ·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〉국토교통뉴스〉보도자료〉건축물 유지 · 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

<건축물 유지 · 관리 점검제도 시행>

▸ 추진배경 : 건축물의 체계적인 성능 유지 · 관리 및 에너지 성능 제고

▸ 주요내용
① 다중이용건축물, 연면적 3천㎡이상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②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
③ 구조·화재안전, 건축설비, 안전강화,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

▸ 시행일 : 2014.

* (**시행 최초 점검기간**) 2012년7월19일 기준,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~ '14.7.19까지,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~2015.1.19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